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rain Pool) 안 내 서

2021. 2.



목 차

I. 사업개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유치대상	1
4. 지원분야	2
5. 지원자격	2
6. 활용방법	3
7. 지원기간 및 내용	3
8. 선정평가	8
9. 사업 추진 절차	9
II. 사업관리	10
1. 사업관리절차	10
2. 사업관리 주요내용	10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11
4. 해외우수과학자 관리 등	12
5. 유의사항	13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13
III. 사업신청	14
1. 신청방법	14
2. 제출서류	15
3. 신청자격	16
4. 문의처	16
5. 추진일정	17
IV. [별첨] 인재매칭플랫폼(RPIK) 안내	18

I. 사업개요

1 목 적

- 해외우수과학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유치하여 국내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우리나라 국제협력·개방도를 높임으로써 혁신적인 R&D 환경을 조성하며, 향후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기반 구축

2 기본방향

- 해외우수과학자 국적 다양화를 위해 1국(한국 제외)에서 각 선발 시기별 총 선정자의 20% 초과 제한 가능
- 국제 한인 연구네트워크 구축·유치 지원 강화를 위해 재외한인 교포 최소 선정쿼터(30%) 적용
- 선정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국 협약포기자(국내 PI 및 해외 우수과학자)에 대해 동사업 3년 참여제한 패널티 부과 조치

3 유치대상

- 해외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기업부설(연)*)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 해외우수과학자는 접수일 기준 반드시 해외(대한민국 외)거주 중이어야 함(재신청 제외)
 - ※ 동사업 기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재신청 가능

4 지원분야

○ 대상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우대분야 : 3대 전략투자, 8대 선도사업,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등 신산업분야 과제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 (유형1) **연구자 맞춤형 유연연구형 신청가능 분야***

*2018년 기술수준평가결과 인력양성 및 유치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한 기술 분야

- 기계·제조 분야 : ① 친환경·스마트 플랜트 기반기술, ②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③ 3D 프린팅 장비·소재 기술
- 농림수산·식품 분야 : ①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②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③ 동물 질병 통제 기술
- ICT·SW 분야 : 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② 초고속 초집적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제작 기술, ③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④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⑤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⑥ 지식정보보안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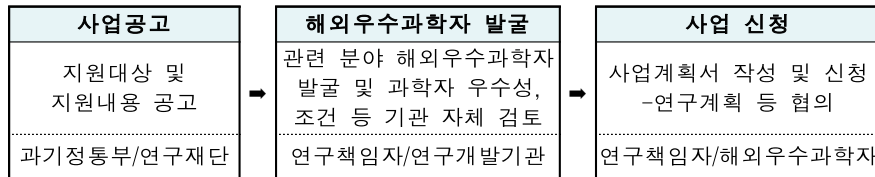
5 지원자격

-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 연구소장 이상인 자
 - ※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는 동일한 유형 내 1인 1과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2 동시지원 불가능

6 활용방법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수한 해외우수과학자를 직접 발굴
 - 연구개발기관이 해외인력 유치 필요성, 해외우수과학자 역량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증해야 함
 -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연구활동 및 행정 등에 대한 지원체제와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추진 절차]



※ 해외우수과학자 발굴 시, **인재매칭시스템(rpik.or.kr, 별첨(p18 참조))**을 통한 해외우수과학자-국내 기관 간 인재매칭 및 취업정보 취득 가능

7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유형1) 6개월~12개월, (유형2) 최대 3년
 - ※ (유형1)산업체의 경우 3개월~12개월 신청 가능하며, (유형1)**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형***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 *2018년 기술수준평가결과 인력양성 및 유치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 평가한 기술 분야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 신청 가능 분야>
· 기계·제조 분야 : ① 친환경·스마트 플랫폼 기반기술, ②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술, ③ 3D 프린팅 장비·소재 기술
· 농림수산·식품 분야 : ① 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②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③ 동물 질병 통제 기술
· ICT·SW 분야 : ①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② 초고속 초집적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제작 기술, ③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④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플랫폼 기술, ⑤ 시스템 SW 운영 및 기반 기술, ⑥ 지식정보보안기술

※ 해외우수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단,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해외우수과학자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유치경비) 등
 - 다음 비목별 지원내역 및 산정기준에 따름

[BP사업 지원 내역]

유형	지원기간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활동비 (유치경비)	
【유형1】 단기지원	6~12개월 ※산업체 : 3~12개월 지원 가능 ※ 연구자 맞춤형 유연 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신청 가능	해외우수과학자의 원소속기관 연봉 수준 지급 (최소 5백만원/월 ~ 최대 25백만원/월)	항공료, 이주비, 보험료, 국내외 출장여비, 학회 참석비 및 논문게재료, 한국어 교육비, 자녀학비 (누리과정), 체재비 등	최대 5백만원 (전담인력 지원비 포함)
【유형2】 장기지원	최대 3년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의 70% 지원	※ 유형2에 한하여 체재비 (12백만원/년)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사업비 교부 : 과제 선정 이후 전문기관(연구재단)과 연구개발기관 간 개별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교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과학자가 입국하는 즉시 여권사본과 함께 입국보고서를 제출할 것)
- ※ **해외우수과학자 미입국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의 입국시점에 따라 개별 협약 및 연구비 지급**
- 사업비 집행 : 개별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과학자에게 인건비를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구활동비(유치경비)는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가. 비목별 e-R&D/통합이지바로시스템 편성내역

구분		e-R&D 시스템 상 세부비목 편성	비고
비목	집행가능비목		
직접비-인건비	해외우수과학자 인건비	인건비-내부인건비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입력
직접비-연구활동비(유치경비)	항공료	연구활동비-국내외 출장여비	e-R&D시스템 상 연구활동비(체재비 및 유치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BP사업 안내서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통상적인 연구활동비와 다름에 유의)
	국내외 출장여비(비자발급 및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비용포함)		
	체재비	연구활동비-인쇄·복사·,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택배비 및 수수료 등	
	이사비(이주비)	연구활동비-국내외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등	
	보험료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한국어교육비			
자녀학비(누리과정)			
간접비	전담인력지원비	간접비	-
	기관간접비		

나. 비목별 집행가능금액

- 인건비 : 5,000~25,000천원/월 이내 정액 지급
- 해외우수과학자의 보수 등을 반영한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보수 산정기준>

- ※ 유치 당시의 소속기관 연봉액을 기준에서 **5백만원 ~ 25백만원/월 이내**로 산정
- ※ 제출된 연봉 관련 서류(한국어 또는 영어)는 해외우수과학자의 월 급여, 4대 보험(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원소속 기관의 월 급여 * 당해 연구기간(연구개월수) = 당해 연도 급여액으로 산정(인건비 산정 시 적용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2020.12.31.일자 기준(USD 1,088.00))
-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 기업 부설연구소의 경우 인건비(해외 원 소속기관 기준)의 70%까지 지원
- ※ 정규직으로 유치 시 본 사업 연구과제에 '정규직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 연구활동비(유치경비) : 세부비목별 한도 초과 금액은 자비 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
- 항공료 및 보험료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 정산

지역	항공료+보험료 (단위 : 천원)		
	3-5개월	6-9개월	10-12개월
일본, 중국, 대만	3,400	5,300	6,200
동남아시아	3,600	5,700	6,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4,100	6,700	7,6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5,100	8,700	9,600
북미(중·동부, 캐나다)	5,600	9,700	10,600
중남미, 아프리카	6,600	11,700	12,600

- ※ 항공료 : 해외우수과학자 본인의 최단 직항 왕복 항공료(국내여비 포함) 지원(1회)
- 12개월 이상 활용과제에 한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1회) 지원 가능
- 유형1의 연구자맞춤형유연연구의 경우 년 1회 3년간 최대 3회 지원 가능
- ※ 상해·질병보험료 : 시중 보험사의 상해·사망·후유장애, 질병치료비 보장을 포함하는 순수보장형 보험의 보험료(실비지급)

- 이사비(이주비) : 아래 지급기준 이내에서 실비 정산

지역	지원액 (단위 : 천원)
일본, 중국, 대만	500
동남아시아	600
인도, 서아시아, 중동	800
북미(서부), 호주, 유럽, 러시아	1,100
북미(중·동부, 캐나다),	1,300
중남미, 아프리카	1,600

- ※ 이사비는 12개월 이상인 해외우수과학자에 한하여 입출국 시 지원, 재신청 국내 체류 해외우수과학자는 1회 지원(실비 지급)
- ※ **유형2의 경우, 연구개시 이후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는 체재비, 이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자녀학비(누리과정 등) : 5,000천원/년 이내 지원
- ※ 해외우수과학자의 직계가족 중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의 보육비 지원(누리과정)

*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득한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유치원 인허가여부는 유치원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에서 조회
 ※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의 교육비 지원(외국인 학교(사립)의 경우: 입학비(등록비), 연간 학비(교육비))

- 체재비 : (유형1)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기관)에서 제공 원칙
 (유형2) 체재비(12,000천원/년 이내) 실비 지원

※ 해외우수과학자의 숙소 등 체류 비용(관리비 제외, 실비 지원), 체재비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포함
 ※ 전세 및 자가에 대해서도 최대 연 12,000천원 수준에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실비지원

- 기타유치경비* : 항공료 및 보험료, 이사비, 자녀학비, 체재비 집행 후 잔액 범위 내에서 집행

* 국내외 출장여비, 학회참석비(연회비), 한국어교육비, 논문게재료, 비자발급 비용,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비용 등

① 국내외 출장여비 : BP사업 과제와 관련 있는 공무상 출장에 한하여 국내외 출장여비를 편성할 수 있으며, 관련 집행기준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을 준용함

※ 비자발급에 따른 소요비용 및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비용 지원 가능

② 학회참석비 및 논문게재료 : BP사업 과제와 관련 있는 학회참석비 및 논문게재료에 한하여 실비 지급

※ 학회참석비는 해외우수과학자 본인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총 연구기간 이내 연회비 지원 가능

※ BP과제 사사표기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게재료 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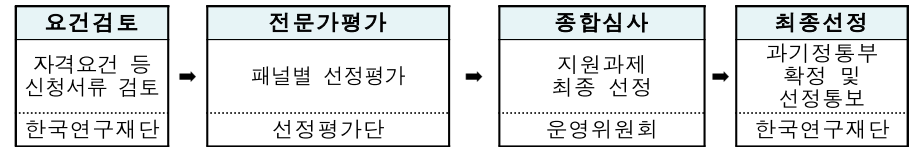
③ 한국어교육비 : 해외우수과학자의 한국어 능력강화를 위한 강의 수강료 및 공인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실비 지급

○ 간접비 : 5,000천원/년 정액 지급

- 전담인력지원비 : 2,400천원/년 가능 ※ 전담인력은 필수지정 아님

8 선정평가

○ 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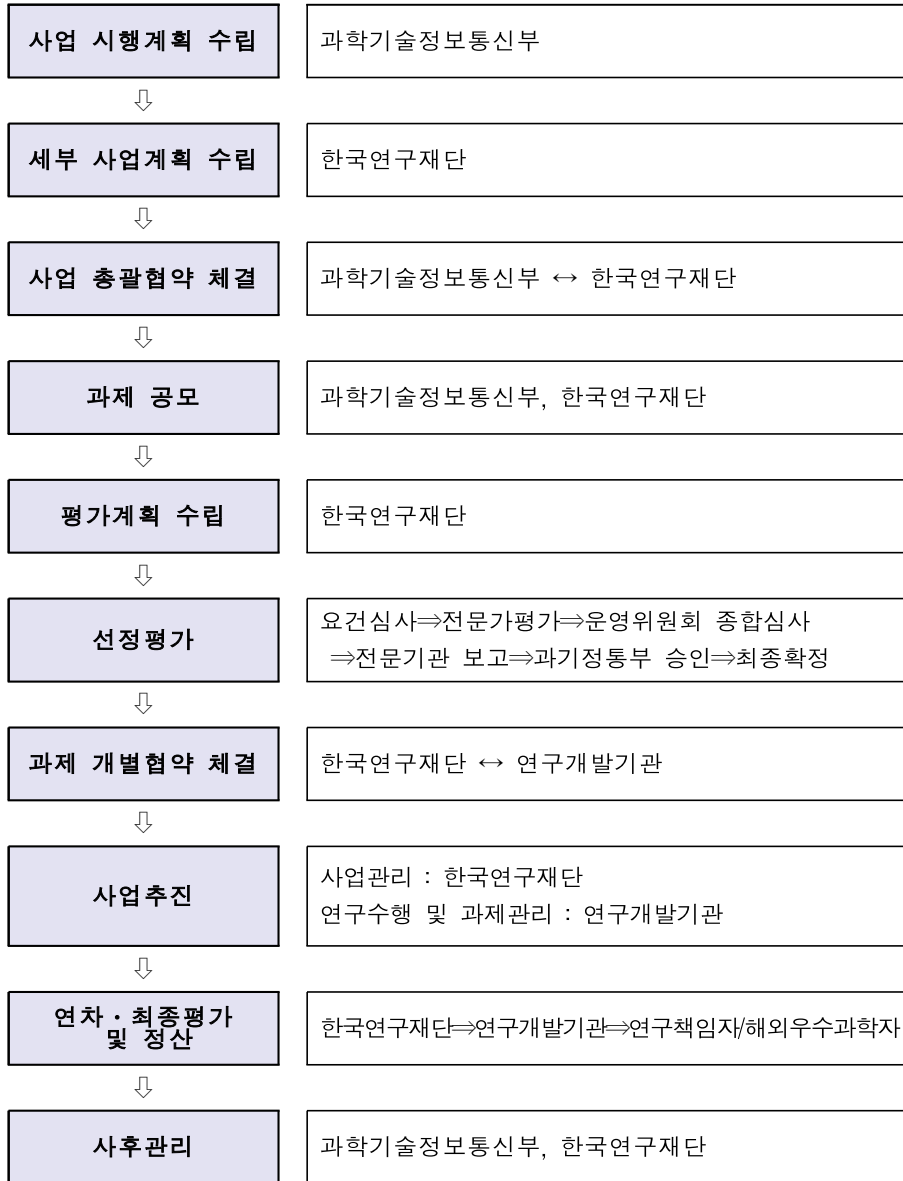
- 요건심사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해외우수과학자 자격요건 검토
- 전문가평가 : 해당분야 전문가의 패널별 평가를 통해 과제별 평균 점수 80점 이상 과제 종합심사 대상으로 추천
- 종합심사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적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종합심사 및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선정 : 과기정통부 선정과제 최종 확정 및 연구재단 선정과제 통보

○ (유형1·2 공통) 신규과제 선정평가 항목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과제 평가 (30)	연구과제의 우수성 및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계획의 우수성 및 창의성 해당분야 및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필요성 	10
	연구책임자 활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역량 (연구역량 등) 	10
	연구과제의 활용정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 협력 가능성 	10
해외 우수 과학자 연구 계획 (30)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 연구계획 연구기간중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계획 	15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해외우수과학자의 정주지원 계획(주거 등) 	15
해외 우수 과학자 역량 (40)	해외우수과학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의 담당업무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계획 구체성 해외우수과학자의 해당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여부 공동연구 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15
	해외우수과학자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우수과학자 학위 및 연구경력 해외우수과학자 최근 5년간 SCI급 논문, 특허, 학술활동 업적 ※ 신임제는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대체 가능 	15
	기대효과 및 적부수행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연구 결과의 파급효과 및 해외우수과학자 지원동기의 적극성 	10
합 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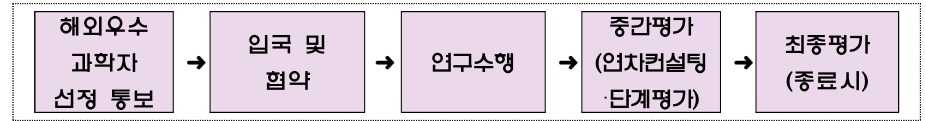
※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자(국내PI·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차년도까지 동사업 신청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BP기수행과제만 해당)

9 사업 추진 절차



II. 사업관리

1 사업관리 절차



2 사업관리 주요내용

- (유치요건 협의) 선정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해외우수과학자 간 유치요건 최종 협의 후 협의결과 제출(연구개발기관→연구재단)
- (선정이후 서류 제출) 해외우수과학자의 연봉 및 학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선정 통보후 별도 안내
- (협약체결 및 협약용 계획서 제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외우수과학자의 국내 입국 및 연구수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과제별 연구개시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 협약 체결 시 협약용 계획서, 연구개발기관-해외우수과학자 계약서, 해외우수과학자 입국보고서(여권사본 등), 해외우수과학자 서약서 등 첨부
- (사업비 지급 및 연구개시) 협약 체결 후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해외우수과학자는 연구개시
 - ※ 선정 통보 후 4개월 이내(최장 2021년 12월까지) 입국 및 연구개시(기한 내 미입국 시 선정 취소 가능)
 - ※ 단,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운영관리지침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따라 연구수행
 - ※ 계획 대비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 보고 및 승인 필요

- (중간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보고서에 대한 연차컨설팅으로 대체
 - 연차컨설팅 : 연도별 연차보고서 등에 연구성과 및 점검 내역을 연구개발기관이 제시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우수과학자 활용 책임성 강화(유형 2)
- (최종평가) 지원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최종평가 실시

3 주체별 역할과 책임

- 사업관리 주체별 아래의 역할과 책임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 해외우수과학자의 연구지원(연구 공간, 연구 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및 한국 생활 정주지원(주거, 생활, 가족 등) 여건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이 반드시 제공

구분	역할 및 책임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포기 및 협약해약 등 발생 시 사업비 반납 등 • 해외우수과학자 지원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 총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우수과학자 숙소 제공 등 정주여건 지원(주거, 생활 등) • 과제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우수과학자의 근태·복무 관리, 진도·성과관리 • 해외우수과학자의 연구비 관리, 연구수행 전반 지도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 국내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연계 및 역량 개발 지원 등
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홍보 및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평가 및 인력/성과의 사후 관리 등

4 해외우수과학자 관리 등

- (근무) 해외우수과학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전일(full-time)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함
 - ※ 연구자 맞춤형 유연연구의 경우 3년 간 6~12개월 연구수행 가능
- (강의 및 연구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승인 하에 대학 강의(2과목 이내) 또는 Brain Pool사업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는 타 R&D과제 참여 및 수행 가능(인건비 계상율 30% 이내)
- (유급휴가) 해외우수과학자의 유급휴가일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복무규칙 등) 준용
 - ※ 유급휴가 허용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인건비를 반납
 - ※ 지원 중단 시 유급휴가 일수는 최종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재산정
- (해외출장) 지원기간(실제연구기간)의 10% 이내에서 가능
 - 해외출장 누적일수가 지원기간(실제연구기간)의 10% 초과 또는 1회에 10일 초과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승인 내역 및 출장계획서를 전문기관에 공문 제출
 - 해외우수과학자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출장결과 보고
 - ※ 해외출장에 대해 공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유급휴가에서 차감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회수
- (기타) 해외우수과학자의 휴가, 해외출장 등 근태 관리의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기관과 해외우수과학자의 근로계약 체결에서 정한 바에 따름

5 유의사항

- 해외우수과학자는 **최종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국 및 연구 착수**하여야 함
 - ※ 단, 전 세계적 재난상황,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사업 신청 및 참여 불가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예외 사업임
 - ※ 단 본 사업에 선정되어 해외우수과학자가 연구책임자로 변경된 경우는 3책5공 대상에 포함됨
- 선정 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국 협약포기자**(국내 PI 및 해외우수과학자)에 대해 **동사업 3년 참여제한 패널티 부과 조치**
 -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긴밀한 협의 필수
- 선정 후 **중도 종료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사업 공고시점으로부터 3년 간 연구책임자 해외우수과학자 동 사업 신청 제한**
 - ※ 사업 신청 전 해외우수과학자와 인건비 및 유치시기 등에 대해 긴밀한 협의 필수
- 선정 후 연구개시한 과제의 경우, **최소 수행기간(12개월)에 미달된 경우는 체재비, 이사비를 반납**하여야 함 (※ 유형2 장기유형에 해당)
- 해외우수과학자 미입국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제 선정 후 해외우수과학자의 입국시점에 따라 협약 및 연구비 지급**
- 연구목적 및 기재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6 연구결과 사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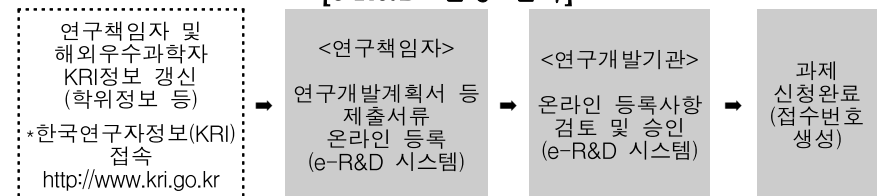
- 사업으로부터 얻은 지적재산권 등 모든 유무형의 권리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되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혹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 연구성과 발표물에는 아래 내용을 표기하여야 함
 -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연구과제번호)
 -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rain Pool program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grant number)

III. 사업신청

1 신청 방법

- 연구개발기관이 해외우수과학자를 발굴하여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emd.nrf.re.kr)**
 - ☞ **【사업분류】교육인력양성사업(H1)-인재활용확산지원(H1D3)-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BP)(H1D3A2)**

[e-R&D 신청 절차]



- ※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정보의 경우(필수입력사항), 본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KRI에 반영되는 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3~4일 전에 미리 업데이트하여야 함
- ※ 사업 신청은 반드시 국내 연구책임자 e-R&D 계정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간을 준수하여 시스템 상 과제신청 및 제출서류 탑재 확인 등 연구자 접수 및 연구개발기관 승인을 완료하여야 함

2 | 제출서류

과제 신청 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동의서 (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각 1부) - 연구윤리준수 보안 서약서 1부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종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기업체 신청과제에 한함 - 해외우수과학자의 유치 수락서(영문)

과제 선정 후 제출 서류(선정과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 (재신청 과제의 경우는 국내 현 소속기관에서의 급여명세서 제출) - 입국보고서 - 보안서약서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지·요약서·첨부서류·안내사항 등 제외하고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출 ※ 해외우수과학자의 유치 수락서는 자유양식이며, e-mail 등 서명이 첨부된 교환서신도 가능 ※ 해외우수과학자의 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는 최종 선정 시 인건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서류로,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공증을 받아 첨부 *연구개발계획서는 국내 연구책임자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해외우수과학자 개요 및 연구내용 등 학술적인 부분은 해외우수과학자와의 연구계획 공유를 위해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가능)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 신청자격

구분	자 격
연구개발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소속 정규직으로 조교수, 선임연구원 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소장 이상인 자 ※ 사업 운영기간 동안 재직이 보장되고 과제수행에 전념이 가능 ※ 연구책임자는 동일한 해외우수과학자와 유형1·2 동시지원 불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라 3책 5공 대상에서 제외
해외우수과학자	①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거주중인 박사학위자 ② (기업부설(연)) 박사학위 없이 해외(대한민국 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유치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험을 가진 과학기술자도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 유치과학자는 접수일 기준 반드시 해외(대한민국 외)거주 중이어야 함 (재신청 제외) ※ 동사업 기수행과제(동일 연구책임자·해외우수과학자)의 경우, 재신청 가능

4 | 문의처

【 문 의 처 】	
사업문의	<p>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p> <p>☎ (국문) 02-3460-5624, 5629, 5647 / E-mail : yokang@nrf.re.kr, salee@nrf.re.kr</p> <p>☎ (영문) E-mail : bpkrf@nrf.re.kr</p> <p>※ 전화문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이메일 문의 부탁드립니다.</p>
온라인 접수문의	<p>한국연구자정보(KRI),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입력 및 제출 관련문의 ☎ 042-869-7744</p>

5 | **추진 일정**

일 정	추진내용
'21.1.25.(월)	2021년도 BP사업 신규과제 공고('21.1~8월까지)
'21.2.26.(금)	1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 3~4월	1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4.30.(금)	2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5~6월	2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6.30.(수)	3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7~8월	3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21.8.31(화)	4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18:00 마감)
'21.9~10월	4차 선정평가(요건검토, 전문가평가, 종합심사) 및 최종선정

※ 동 사업안내서는 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협약서에 따름

IV. [별첨] 인재매칭플랫폼(Research Position in Korea, RPIK) 안내

○ **인재매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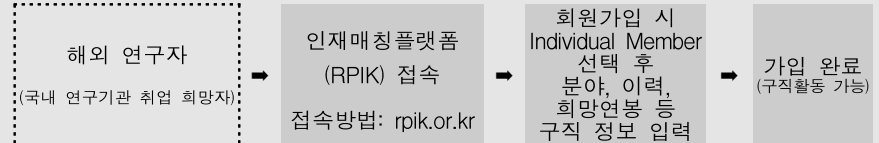
- 해외 연구자, 국내 연구기관이 온라인 가입(rpik.or.kr) 후 자율적으로 매칭 및 1:1 커뮤니케이션 진행
- 해외 연구자와 국내 연구개발기관 간 구인 · 구직 지원 플랫폼

○ **인재매칭 대상** : 국내 연구개발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해외우수과학자 및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연구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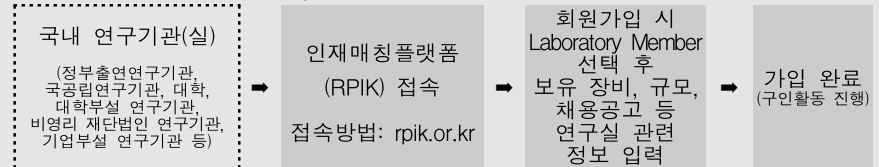
○ **인재매칭 절차** : 국내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가 RPIK 시스템에 가입 후 관심 있는 국내연구책임자 및 해외우수과학자 간 자율 매칭

[RPIK 가입 절차]

① **해외연구자(individual member)**



② **국내연구기관(laboratory member)**



○ **주의사항**

- 매칭될 경우 해외우수과학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매칭 이후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연구개발기관이 해외우수과학자를 발굴하여 신청한 경우와 동일(별도 가점 없음)
- 해외우수과학자의 협의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인재매칭 신청 요망
- 해외우수과학자의 신청자격 요건은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확인 필요

○ **RPIK 시스템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국제연구협력팀

☎ 02-3460-5639, 5622 / E-mail : joohyenam@nrf.re.kr, moonlight@nrf.re.kr